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2020. 6.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0-56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0년 5월 22일(금)
- 라. 회부일자: 2020년 5월 26일(화)

2. 제출사유

2019. 8. 1. 자 조직개편으로 관광진흥센터가 관광마케팅팀으로 전환되어 구청사 내로 이전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제3장 관광진흥센터 운영 관련 조항 삭제(안 제8조 ~ 제17조)
 - 관광진흥센터 이전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업무 관련 규정 삭제
- 나. 종합관광안내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2조 ~ 제22조의4)
 - 종합관광안내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제3장을 삭제함에 따라 안내소 운영지원 내용 수정 및 수탁자 선정, 협약 체결,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0. 2. 6. ~ 2. 26.(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4)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해당없음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 03. 24.)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됨.
- 동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2019년 8월 1일 마포구 조직개편으로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진흥센터가 관광 마케팅팀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 조례 중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자 함이며, 이와 관련,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해 적용되었던 조항까지 삭제됨에 따라 종합관광안내소 업무의 사무위탁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을 조별로 살펴보자면 마포구 관광진흥센터 운영 관련 조항인 안 제8조 ~ 제17조를 전부 삭제하였고,
- 안 제18조에서는 “종합관광안내소설치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으로 수정하였음.
- 안 제22조에 종합관광안내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바 제22조제1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22조제3항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22조의2,3,4에서는 수탁자 선정, 협약 체결, 수탁자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살펴 보건데 각각의 개정 조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상충되는 바가 없으며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22조의2(수탁자의 선정) 제2항을 보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여 인원 구성을 탄력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인원수를 확정하고 있어 각각의 조항이 서로 상응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한 가지 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의2(수탁자 선정 등) 제4항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과 동 조례 제31조(수당)의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수당) 조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시행일 : 2019.03.21)

제13조(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